

“이서초등학교 연말정산 나이스 입력기간 1월 22일(월)부터 ~ 1월 24일(수)까지 예정”

2023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2024년 1월 24일(수, 예정)까지 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류 꼭! 제출해 주세요~**

☞ 2024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2024년 1월 15일(월) 오픈

- ▶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게 원칙
- ▶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시 소득자 본인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원칙
- ▶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국번없이 126 - 내선 1 - 5번
- ▶ 연말정산 세법상담: 국번없이 126 - 내선 2 - 3번
-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2024년 1월 15일(월) 오픈될 예정**
-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절차가 없어도 조회 가능)

☞ 기한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

국세청홈택스(<http://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내역조회 → 귀속년도(2023)
- 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
- 건강보험부터 기부금까지 돋보기 클릭(해당 세액공제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
- 한번에 내려받기 → PDF파일 암호 없이 저장후 → thdud9453@jbedu.kr 으로 보내주세요.

☞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2024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 하는 방법 ▣

- ▶ 홈택스 소득세액공제자료 **2024. 1. 15. (월)** 오픈예정이며
- ▶ **2024년 1월 20일(토) 이후부터 PDF파일 다운후 업로드 권장.**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 “PDF파일 출력하여 제출”
- ▶ 홈택스에서 다운 받은 PDF파일을 나이스에 업로드하여 진행

제출 기간 : 1월 22일(월)부터 ~ 1월 24일(수)까지 예정

1. 국세청홈택스(<http://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화면은 다를수 있음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세금신고
납부
고지 · 환급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 공익법인

장려금 ·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상당 · 불복 · 고충
제보 · 기타
세무대리
납세관리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전자기부금영수증

⊖ 근로 · 자녀장려금
⊕ 연말정산 간소화
⊖ 편리한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영수증

- ▶ 본인 공인인증서등록 방법->홈택스 상단 로그인 클릭->공인인증서등록->주민등록번호입력->등록하기->해당공인인증서선택후->확인
- ▶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함,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를 있어야 함.(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 절차가 없어도 조회 가능)

2. 연말정산 간소화->근로자 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포털 바로가기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부양가족 동의 현황
조회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 (동의), 취소 및 조회

회사 신청(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① 이용시간

매일 06:00~24:00

근로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사업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	부양가족 자료제공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미성년 자녀/본인인증수단/팩스신청)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조회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진행상황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취소 신청	기타 -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영수증 발급처 (은행 · 학교 · 병원 등)	자료제출 승인 신청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제출 · 조회	기타 -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일정 및 제출방법 안내 - 영수증 발급처 전화번호 조회
연말정산 일괄제공 (국세청 → 회사)	근로자 - (근로자용) 일괄제공 신청확인동의취소조회	원천징수의무자(회사)	

3. 귀속년도 2023년->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건강보험부터 기부금까지 돋보기 클릭(해당 세액공제 아래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한번에 내려받기->PDF파일로 저장

★ (비밀번호 없이, 파일명은 2023년 연말정산 본인 성명)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귀속년도: 2023년

전체월선택: 1월 7월, 2월 8월, 3월 9월, 4월 10월, 5월 11월, 6월 12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안내 **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

본 서비스는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납세자에게

PDF파일로 한번에 내려받기
ex) 파일명: 2023년 연말정산(홍길동)

주), 자녀양육비 중복공제 (양벌이 부부가 자녀양육비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등 부당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으면 사후에 세금(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 하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My홍택스」에 접속하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중 올해 성년이 된 자녀(‘00년생)는 자녀본인이 상당 우측의 「제공동의현황」에 들어가서 자료제공동의를 새로 신청해야 해당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조회 됩니다.

step 1. 적용월 선택

건강보험부터 기부금까지 돋보기 클릭후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만 체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 되지 않으면 체크 해제

step 4. 예상세액 계산 (선택된 본인 및 부양가족을 반영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전산작성, 연말정산 세액 자동계산.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출력 및 다운로드

step 5. 회사에 제출 (출력물,PDF,온라인 제출)

4. 나이스 접속->기본메뉴->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귀속년도 2023년->조회->PDF업로드->찾기 [홍택스에서 다운 받은 PDF파일(2023년 연말정산 홍길동.pdf) 파일 찾기]->등록(*22년 것이라 화면 다름)

기본메뉴 업무메뉴

1 메뉴검색

승인사항

나의 메뉴 2

3 연말정산

4 정산공제자료등록

5 귀속년도 2023년

6 조회

7 PDF업로드

8 찾기

9 등록

정산공제자료등록

귀속년도 2023년

기분사항 근무지실적 인적공제 특별공제 그밖의소득공제 세액공제/명세 소득공제신고서 PDF업로드 원천징수영수증

비밀번호 PDF파일 찾기 등록

비밀번호 PDF파일 찾기 등록

※ 파일 업로드시 주의사항

- 업로드시 인적공제내역에 존재하지 않는 자료는 등록 안 되오니 먼저 인적공제내역에 입력 후 등록하십시오.
- 상세내역(의료비, 기부금, (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증권저축) 자료만 개별내역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PDF파일 다운로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한 경우 비밀번호 입력란에 입력해야합니다.
- PDF파일업로드 메뉴에서 등록된 파일은 업로드 이후에는 업로드 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없습니다.

👉 파일 업로드시 주의사항 👈

- ▶ 업로드시 인적공제내역에 존재하지 않는 자료는 등록 안 되오니 먼저 인적공제내역에 입력 후 등록 하십시오.
 - 인적공제 내역에 존재하는 대상자만 업로드하여 적용 가능
 - 소득공제 받고 싶은 인적공제가 먼저 등록 되어 있어야함
- ▶ 상세내역(의료비, 기부금, (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증권저축) 자료만 개별 내역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PDF파일 다운로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한 경우 비밀번호 입력란에 입력 해야합니다.
- ▶ PDF파일업로드 메뉴에서 등록한 파일은 업로드 이후에는 업로드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없습니다.

👉 입력시 유의 사항 👈

1. 정산공제자료 PDF파일 등록전 인적공제 대상자 확인후 소득 기본대상자가 아닌 대상자는 삭제 후 업로드 해야함.
 - 홈텍스에서 받은 파일의 기본공제 대상자와 나이스 정산공제자료-인적공제 기본대상자가 일치 해야함(홈텍스 PDF파일 다운로드시에도 기본공제 대상자만 받아야함)
 - 인적공제 대상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확인 요함
2. 홈텍스 공제자료 외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기부금명세서등록 입력시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 번호는 숫자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ex) 750308-1234567 → 7503081234567

제 출 서 류

(해당항목만 제출)

제출기한	2024년 1월 24일(수) 예정
입력기간	1월 22일(일)부터 ~ 1월 24일(수)까지 예정 가급적 입력 기간내 입력요함.
제출서류	대상자 및 증빙서류
① 소득공제신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전 교직원 나이스 - 기본메뉴 - 연말정산 - 정산공제자료등록 - 소득공제신고서 탭 - 귀속년도(2023년) - 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②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파일 및 기타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전교직원 국세청홈텍스(http://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근로소득자 세액소득공제 내역조회 - 귀속년도(2023년) - 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 - 건강보험부터 기부금까지 돋보기 클릭(해당 세액공제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 - 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 - PDF파일 암호 없이 저장[파일명: 2023년 연말정산 본인성명.pdf]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 “PDF파일 출력하여 제출”</p>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제출 대상자 : 기본공제 대상 확인용으로 부양가족 공제 신청자 ☞ 정부24 : http://www.gov.kr (기존명 민원24)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자 : 부양가족 공제 신청자 중 <u>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 아니하는 경우만 제출</u>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http://efamily.scourt.go.kr
④ 연금저축공제명세서, 월세명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해당자 나이스 - 기본메뉴 - 연말정산 - 연금저축공제등록 - 귀속년도(2023년) - 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대상자 : 해당자 나이스 - 기본메뉴 - 연말정산 - 월세명세서등록 - 귀속년도(2023년) - 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⑤ 의료비지급명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해당자 나이스 - 기본메뉴 - 연말정산 -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 귀속년도(2023년) - 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⑥ 기부금명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해당자 나이스 - 기본메뉴 - 연말정산 - 기부금명세서등록 - 귀속년도(2023년) - 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자주 묻는 질문

1. 배우자 공제: 1. 배우자가 2023년 근로소득액이 총500만원 이하인 경우
2. 배우자가 근로소득 없이 종합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2. 부녀자 공제: 1. 본인이 여성이며 2023년 종합소득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2. 본인이 여성이며 종합소득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3. 부양가족 공제: 1. 2023년 종합소득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인 만60세이상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4. 장애인 추가공제: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증명서 제출
5. 인적공제 제출서류: 거주 같이 안 할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